

October 15, 2026

[판례] 대법원, 외국인투자 배당세액 감면은 감면결정 받은 증자분에만 적용 —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과세 상한일 뿐 (2021두51041)

I.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1 두 51041 판결

1. 사실관계

네덜란드 법인 B 는 2004 년 국내법인 A 의 신주를 전부 인수하였고, A 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A 는 B 로부터 아래와 같이 네 차례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i) 1, 2 차 증자를 통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반도체장비 제조업(이하 “본건 감면사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으나, (ii) 3, 4 차 증자를 통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통지를 받았다.

A 는 2011~2014 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B 에게 약 847 억 원을 배당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당시 A 는 (i) 본건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본건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100%)에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한 후, (ii) 나머지 과세대상 배당금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i) 총자본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감면대상투자금 비율(44%)을 적용하여 감면대상 배당금을 산출한 후, (ii) 나머지 과세대상 배당금에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총액에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10%)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법인세 약 77 억 원을 고지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쟁점①) 일부 증자분만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비율과 배당 감면 규정은 모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를 공통적인 전제로 한다.

감면결정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감면 적용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고, 증자를 통해 추가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도 해당 증자와 관련한 감면결정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조세감면대상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본건 감면사업을 위한 신규 투자로 배정받은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한정되므로, 구주에서 생기는 배당금 및 3, 4 차 증자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은 조세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쟁점②) 국내법상 배당세액 감면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 순서와 방식

조세조약은 원천지국의 법률에 의한 과세를 전제로 하면서 거기에 단지 상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즉,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할 수 있되, 다만 최종 납부세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산정한 조세의 금액이 한 · 네 조세조약이 과세의 상한으로 설정한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과세대상 배당금에 국내법상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배당금 총액에 대하여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시사점

대법원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은 조세감면결정에 따라 해당 투자가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고,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아니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세감면결정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대법원은 감면결정을 감면 적용의 실질적 전제요건으로 보았으므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감면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증자분을 배당 단계에서 단순히 기존 감면사업과 연결하여 감면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배당을 예정하고 있다면 증자 시점부터 감면결정의 범위가 희석되지 않도록 구조와 절차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동일하고 최종 지분율이 100%이더라도, 각 증자분의 세제상 성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증자 때마다 감면신청 여부, 감면결정 내용, 투자금액, 발행주식 수 및 감면대상사업과의 연결관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자가 여러 번 있었던 경우는 더욱 그러한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시 “국내법상 감면을 적용한 과세표준에 조약세율을 적용”하는 식의 단일 계산은 위험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내법상 감면을 반영한 세액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비교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의하면, 국내법상 조세감면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두 혜택을 단순히 연속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낮출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배당세액 감면을 “기업 단위”가 아니라 “감면결정을 받은 투자 단위”로 추적해야 한다는 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국내법률에 의한 과세의 상한을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관련 구성원

장성두

변호사

T 02.3404.6585

E sungdoo.jang@bkl.co.kr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